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로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국내대리인의 대리 범위를 현실화함(안 제31조의2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운영하는 국내 법인이 아닌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거나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국내대리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5조제3항·제4항).

II. 검토의견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에 대한 부칙 정비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은 대규모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지사(국내 법인)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별도의 페이지کم

퍼니(paper company)나 법무법인(로펌)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취지임. 이를 위해 안 부칙 제3조는 경과조치를 두어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운영 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음.

한편,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적용례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국내 법인 지정의무에 관한 안 제3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이에 따를 경우 이 법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국내 법인 지정의무를 규정한 안 제31조의2제2항뿐만 아니라, 그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안 제75조제3항은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음.

그로 인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6개월의 지정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더라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새로 지정하지 않고 버티는 등의 경우, 개정안의 국내 법인 지정의무 및 그 위반 과태료 도입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제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¹⁾

1) 종전 규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가 개정규정에 따르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현행 제61조의 ‘개선권고’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나, 이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이어서, 개정안이 이와 별도로 ‘국내 법인 지정의무’ 및 그 위반 과태료를 새로 도입하는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봄.

따라서 안 제3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두기보다는, 위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전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국내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이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안 부칙 제2조 적용례는 삭제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면서, 일부 자구 정비 수정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부 칙	부 칙
제2조(국내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삭 제>
제3조(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 중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조(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 ----- ----- ----- 법인이 ----- ----- 그 법인 중에서 국내 대리인을 -----.

2. 그 밖의 조문 정비(안 제31조의2제1항 등)

개정안 제31조의2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은 교육 내용이나 세부 점검 사항 및 실시 주기 등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음.

그러나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위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안 제75조제3항제3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떠한 내용을 교육·점검하여야 하며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해 보이는바, 이를 대통령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두어야 할 것으로 봄.

한편, 현행 제31조의2제1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함을 규정하는 조항이고,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은 이와 별개라 할 것이므로, 개정안의 ‘관리·감독’ 관련 사항은 별도 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조문 체계의 정합성 제고 등에서 바람직하다고 봄. 또한, 과태료에 관한 안 제75조제3항은 서로 다른 위반사항을 같은 항 제2호 하나로 포괄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국내대리인의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항으로 신설하면서 관리·감독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과태료 규정을 함께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

[안 제31조의2제1항 및 안 제75조제3항에 대한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 ----- ----- ----- ----- ----- ----- ----- ----- ----- -----지정하고, 지정된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교육하고 업무 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 ----- ----- ----- ----- ----- ----- -----지정----- -----. -----.
1. 제3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1. 제31조제3항제3호----- -----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1. (개정안과 같음)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2. 3. (개정안과 같음)
② (생략)	② (생략)	② (생략)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국내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③·④ (생략) 제75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u>아니한</u> 자 <신설> 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 -----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신설>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u>아니한</u> 자 ④ (생략)	<u>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u> ④·⑤ (개정안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 1. (개정안과 같음) 2. ----- ----- ----- <u>아니한</u> ----- 3.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4.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하지 <u>아니한</u> 자 ④ (생략)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